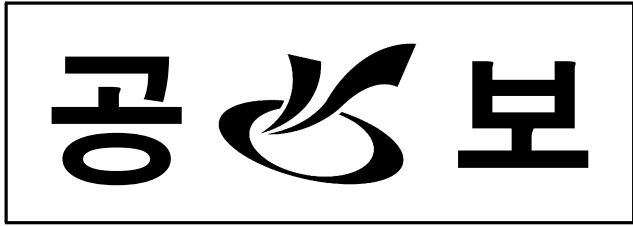
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관의 장
람	

제 635호

2008년 5월 1일 목요일

## 차 례

### 규 칙

-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..... 2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381호 공시송달공고 ..... 8

회							
람							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

**규 칙**

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 
**부 구 청 장 백 인 석**

2008년 5월 1일

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98호

**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 
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**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 및 지급액)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(이하 “종사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“월 3만원”의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“사회복지시설 종사자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한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
2. 「노인복지법」
3. 「아동복지법」
4. 「장애인복지법」
5. 「정신보건법」
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7.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

- 8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- 9. 「영유아보육법」
- 10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1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12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③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종사자의 임면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각 시설별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임면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3조(교부신청)** 종사자 장려수당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급방법)**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종사자 장려수당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후, 시설에서 매월 급여지급 시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.

② 종사자의 임용 및 퇴직 등으로 인하여 지급 월에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경우 종사자 장려수당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**제5조(준용)**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법률과 「인천광역시서구 보조금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

[별지 제2호서식]

## 보조금 교부 신청서

1. 사업명 :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
2. 사업내용 :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월정 수당지급
3. 교부신청금액 및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종사자장려수당	산 출 내 역	비 고
( )월 청구액		①-②	
금월소요액(①)			
전월잔액(②)			퇴직자 반납액

「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3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시설명	(직인)
소재지	
대표자	(인)
예금계좌번호	(○○은행)

※ 첨부서류 :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1부.





**공 고**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381호

**공시송달공고**

귀하께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(수취인 불명 등)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8.05.30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,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등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2008. 4. 30.

**인천광역시 서구청장**

- 1. 제 목 :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
- 2. 처분근거 : 건축법 제80조
- 3. 처분원인 : 건축법위반
- 4. 처분대상

성 명	주 소	위 반 위 치	체납금액(원)	비고
장문희	인천 서구 연희동 689-40, 3/3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17-14, 217-21, 백합마을 (501,502,503,504호)	639,900	
윤기숙	인천 서구 가좌동 143-23, 흥기연립 2/204	인천 서구 신현동 254, 주공(A) 42/506	2,023,100	
김봉식	인천 계양구 계산동 939-34, 202호	인천 서구 백석동 102-11	6,911,800	
김원석	인천 부평구 산곡동 155-1, 한양아파트 101/1803	인천 서구 가좌동 291-25	2,575,000	
조향엽	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-12, 601호	인천 서구 심곡동 255-3	725,610	

- 5. 공고기간 : 2008.05.01. ~ 2008.05.14.
- 6. 게시장소 : 시보,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
- 7. 기타사항 :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며, 납부의사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☎ 032)560-4712)